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

##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5. 11. 18.

다. 상정일자: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12. 1.)

###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홍보미디어과장 이기연】

### 가.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제작·배부되고 있음에 따라 홍보물 심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홍보물의 정의 대상 변경(안 제2조)

## ○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 ○ 홍보물 심의 대상 및 심의 제외 대상 구분 (안 제6조)

###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 다. 참고사항

- 입법예고: 2025. 10. 10.~10. 30. 결과: 의견 없음

##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① 조례의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로 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제작·배부되고 있음에 따라 홍보물 심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② 주요 개정내용

#### ○ 제2조

- 홍보물의 정의 중 예시(스티커, CD, 음원, TV 및 신문 광고 등)를 간략히 정리하여 “스티커 등”으로 단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체 표현을 정비함.

#### ○ 제4조 제1항

- 홍보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심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함.

#### ○ 제5조 제4호 (신설)

- 홍보물의 디자인 및 편집 상태 등 형식적 요소도 심의 대상에 포함 시켜, 보다 종합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기준 확대.

#### ○ 제6조 제목 및 조항 정비

- 조문 제목을 “사전심의”를 “심의 대상”으로 변경하여 내용에 부합하도록 함.

- 심의가 필요한 홍보물 유형과, 심의 제외 가능 홍보물 유형을 구분하여 각각 1항과 2항으로 체계 정비.
- 심의 제외 홍보물에는 내부 문서, 정기물, 단순 행사 홍보물 등이 포함됨.

#### ○ 제6조의2 (신설)

- 홍보물 심의 의뢰 시, 제작 20일 전에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저작권 등 관련 법률 검토 완료를 의무화함.

#### ○ 제8조 제3항(신설)

- 홍보물 심의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대면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도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 제9조 제2항

- 담당자 명칭을 “홍보팀장”을 “홍보물 심의 업무 소관 팀장”으로 명확하게 정비함.

#### ○ 제19조 제2항

- 조례 별지 서식 명칭을 “판매소 관리대장”, “직접판매 관리대장”으로 구체화하여 행정 문서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함.

### ③ 개정내용 검토

#### ○ 법령 정합성 및 제도적 타당성

- 「공직선거법」, 「지식재산권법」 등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법 가능성을 차단.
- 홍보물 심의의 사전절차와 예외범위를 조문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함.
- 위원 수 증원 및 서면심의 가능 규정 등은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 기대 효과

- 홍보물의 품질 및 공공성 제고.
- 위법 소지 예방과 민원 발생 사전 차단.
- 정책 홍보물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 체계 강화.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물 심의 대상과 심의 제외대상을 현행 설정에 맞게 개정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판별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5-152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5. 12. 1.  
발의자 : 행정건설위원회

## 1. 수정이유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함에 따라 심의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고 심의 제외범위를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 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홍보물 심의 제외 대상에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을 삭제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만 규정함. (제6조제2항제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을 “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사전심의)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제출하여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li> <li>「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li> <li>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li> <li>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li> <li>제작비용이 100만 원 이하인 홍보물</li> </ol>	<p>제6조(심의 대상)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을 대상으로 구 전 지역에 배포하는 홍보물</li> <li>구민의 생활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홍보물</li> <li>그 밖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홍보물</li> </ol>	<p>제6조(심의 대상) ① (개정안과 같음)</p>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 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업무 편람, 내부 회의자료

3. 관련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

4.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

5. 단순한 정보 전달물(행사안내·계도·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판촉물 등)과 언론매체 의뢰 광고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②-----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행사안내·계도·홍보  
를 위한 단순한 정보  
전달물

6. (개정안과 같음)